

의안번호	2213932
의 퇴 인	엄태영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7.
추 계 번호	25E588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
적용기한 5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6년 20억원, 2030년 20억원 등 5년간 총 100억원(연평균 2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69조의3)	-20	-20	-20	-20	-20	-100	-20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9조의3 (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	-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(개정안) 2030년 12월 31일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9조의3 (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, 부동산 양도일이 포함된 연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모두 발생한다고 가정
-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의 세수 효과는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감면실적을 활용하여 추계
 - 최근 조세지출 실적은 불규칙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, 2023~2025년 감면실적 평균(20억원) 수준에서 향후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개요) 동 감면은 어업용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%를 감면하는 제도임
- (감면실적)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최근 실적은 다음과 같음
 - 동 제도는 2017년 개정으로 신설된 후, 연도별 실적이 다소 불규칙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

[표 2]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적: 2020~2025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	'23~'25년 연평균
감면실적	19	17	24	25	24	11	20

주: p는 잠정치임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연도

(2) 추계 방법

-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2023~2025년 감면실적 평균(20억원)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연도별로 감면실적이 불규칙하게 증감을 보이고 있으므로, 최근 실적의 평균치를 활용

(3) 추계결과

-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6년 20억원, 2030년 20억원 등 5년간 총 100억원(연평균 2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69조의3)	-20	-20	-20	-20	-20	-100	-20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